

2022년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표준진료지침]

비대면 연수교육

교육일시: 2022.4.14.(목) 09:00 ~ 18:00

구분 (각 50분)	주제 (강의포함 요청사항)	강의자
1차시	표준진료지침(CP & CPG) 개념과 최신동향	정명숙 (KoSQIN 이사)
2차시	CP 관리 표준 (조직, 개발과정 표준화, 지표관리 표준)	여상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영혁신팀장)
3차시	표준진료지침 적용사례 (1)	서보영 (중앙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
4차시	표준진료지침 적용사례 (2)	김민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PI팀장)
5차시	표준진료지침 적용사례 (3) - 신포괄수가제 관련	오인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적정진료지원부장)
6차시	표준진료지침 적용사례 (4) - 신포괄 수가제 관련	이수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QI팀장)

* 교육등록자에 한하여 강의 자료는 PDF파일로 제공되며,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드립니다.

* 필수) 강의 수강률 100% 충족 시 이수증이 발급되므로, 강의 수강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 (4월 14일 (목) 09:00 ~ 4월 15일 (금) 17:00)내에는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등 록 안 내

<참가인원>

제한없음

<참 가 비>

등록 정/준회원 : 6만원

※ 회원 구분

- 등록회원 : 회원 가입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1 년간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정회원 : 간호사
- 준회원 : 간호사 이외 직종

<등록안내>

- 1) 등록기간 : 3월 3일 (목) 13:00 ~ 3월 31일 (목) 24:00
- 2) 등록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대회/연수교육 -> 비대면 연수교육 신청 -> 가상계좌로 교육비 입금
- 3) 등록완료는 참가신청 후 입금까지 완료된 상태로 등록기간 내 미입금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가상계좌 입금기한과 무관합니다.)

<수강방법>

- 1) 수강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동영상 강의실 -> 내 강의보기 -> 해당 교육의 [시청하기] 클릭
- 2)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4월 14일 (목) 09:00 ~ 4월 15일 (금) 17:00) 내에는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수 증>

- 1) 출력방법 : 동영상 강의실 - 이수증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 학술대회/교육이력 화면에서 출력
- 2) 해당 교육은 실시간 동영상 강의로 수강률 100% 충족하여야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3) 제공되는 강의영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하여 강의 수강률 100% 충족하여야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의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4) 발급된 이수증은 4월 18일 (월) 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하며,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 동안은 이수증 조회 및 출력이 불가합니다.

<영 수 증>

- 1) 가상계좌로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결제사(NHN KCP)를 통해 거래명세서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2) 결제요청 시 현금영수증 용도 선택 후 등록 가능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중 하나 선택하여 등록.
- 3) **기관(병원)에서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행용도 확인 후 현금영수증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 사업자 지출증빙)**
- 4) 현금영수증 용도 오류로 인한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 5)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등록된 날로부터 1일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6) 거래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재발송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kosqin@qi.or.kr)로 재발송이 필요한 내역 / 성함 / 휴대전화번호 / 소속기관 / 입금일자를 기입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7) 영수증 관련 업무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매주 목/금요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알 림>

- 1) 환 불 : **4월 11일 (월)부터 환불 불가합니다.**
- 2)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 학회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교육 등록 취소 및 환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해당 교육은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7.1 조사항목 2.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에서 요구되는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급성기 병원 3주기 인증조사 표준지침서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관련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 교육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 의>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사무국 02-701-4799, kosqin@qi.or.kr